

제4회 원규심의위원회

2017. 9. 4.(월)

심 의 안 건

서울연구원

The Seoul Institute



순서

1. 직원채용규칙 일부개정((안)	1
2. 직원평가규칙 일부개정(안)	3
3. 정원외직원 임용규칙 일부개정(안)	5
4. 인사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(안)	8
5. 연봉급산정규칙 일부개정(안)	11

직원채용규칙 일부개정[안]

1. 의결주문

직원채용규칙 일부개정[안]을 다음과 같이 의결함.

2. 제안사유

공개채용시 임용기간에 따라 공고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된 기능직 삭제

3. 주요내용

- 임용기간에 따라 공고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
 - 임용기간에 따른 모집공고일 기준 마련(안 제2조)
- 폐지된 직종을 삭제
 - 일반직으로 전환된 기능직 삭제(안 제4조 별표 1)

4. 시행일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모집공고) 공개채용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시험기일 15일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모집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1~7호 (생략)</p> <p>제4조(시험과목)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과목은 [별표1]과 같다.</p> <p>[별표1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 험 과 목(필 기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90%;">시 험 과 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직</td> <td>.외국어 (영어, 일어, 독일어, 불어, 중국어 중 택일) .전공분야 (분야별로 택일) - 도시계획 - 교통계획 또는 공학 - 환경계획 또는 공학 - 경제학 또는 행정학 - 도시.지리정보체계 또는 전산정보 - 사회학 또는 사회 복지학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일반직</td> <td>- 영 어 - 행정학, 행정법, 법학, 경제학, 경영학, 회계학 중 택일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문직</td> <td>- 영 어 - 전공분야(분야별로 택일) .사서 : 문헌정보학 .전산 : 자료구조론, 소프트웨어공학, 전자계산기구조론, 통신이론 .조사 : 매스컴론, 출판잡지론, 신문론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능직</td> <td>- 영 어 - 일반상식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※ 분야별 필기시험은 위 전공과목 외에도 원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시 험 과 목	연구직	.외국어 (영어, 일어, 독일어, 불어, 중국어 중 택일) .전공분야 (분야별로 택일) - 도시계획 - 교통계획 또는 공학 - 환경계획 또는 공학 - 경제학 또는 행정학 - 도시.지리정보체계 또는 전산정보 - 사회학 또는 사회 복지학	일반직	- 영 어 - 행정학, 행정법, 법학, 경제학, 경영학, 회계학 중 택일	전문직	- 영 어 - 전공분야(분야별로 택일) .사서 : 문헌정보학 .전산 : 자료구조론, 소프트웨어공학, 전자계산기구조론, 통신이론 .조사 : 매스컴론, 출판잡지론, 신문론	기능직	- 영 어 - 일반상식	※ 분야별 필기시험은 위 전공과목 외에도 원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.		<p>제2조(모집공고) 공개채용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시험 실시일 10일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 단, 임용기간이 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7일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.</p> <p>1~7호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시험과목)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과목은 [별표1]과 같다.</p> <p>[별표1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 험 과 목(필 기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90%;">시 험 과 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직</td> <td>.외국어 (영어, 일어, 독일어, 불어, 중국어 중 택일) .전공분야 (분야별로 택일) - 도시계획 - 교통계획 또는 공학 - 환경계획 또는 공학 - 경제학 또는 행정학 - 도시.지리정보체계 또는 전산정보 - 사회학 또는 사회 복지학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일반직</td> <td>- 영 어 - 행정학, 행정법, 법학, 경제학, 경영학, 회계학 중 택일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문직</td> <td>- 영 어 - 전공분야(분야별로 택일) .사서 : 문헌정보학 .전산 : 자료구조론, 소프트웨어공학, 전자계산기구조론, 통신이론 .조사 : 매스컴론, 출판잡지론, 신문론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능직</td> <td>- 영 어 - 일반상식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제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※ 분야별 필기시험은 위 전공과목 외에도 원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시 험 과 목	연구직	.외국어 (영어, 일어, 독일어, 불어, 중국어 중 택일) .전공분야 (분야별로 택일) - 도시계획 - 교통계획 또는 공학 - 환경계획 또는 공학 - 경제학 또는 행정학 - 도시.지리정보체계 또는 전산정보 - 사회학 또는 사회 복지학	일반직	- 영 어 - 행정학, 행정법, 법학, 경제학, 경영학, 회계학 중 택일	전문직	- 영 어 - 전공분야(분야별로 택일) .사서 : 문헌정보학 .전산 : 자료구조론, 소프트웨어공학, 전자계산기구조론, 통신이론 .조사 : 매스컴론, 출판잡지론, 신문론	기능직	- 영 어 - 일반상식	<삭제>		※ 분야별 필기시험은 위 전공과목 외에도 원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.	
구분	시 험 과 목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직	.외국어 (영어, 일어, 독일어, 불어, 중국어 중 택일) .전공분야 (분야별로 택일) - 도시계획 - 교통계획 또는 공학 - 환경계획 또는 공학 - 경제학 또는 행정학 - 도시.지리정보체계 또는 전산정보 - 사회학 또는 사회 복지학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	- 영 어 - 행정학, 행정법, 법학, 경제학, 경영학, 회계학 중 택일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직	- 영 어 - 전공분야(분야별로 택일) .사서 : 문헌정보학 .전산 : 자료구조론, 소프트웨어공학, 전자계산기구조론, 통신이론 .조사 : 매스컴론, 출판잡지론, 신문론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능직	- 영 어 - 일반상식																										
※ 분야별 필기시험은 위 전공과목 외에도 원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시 험 과 목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직	.외국어 (영어, 일어, 독일어, 불어, 중국어 중 택일) .전공분야 (분야별로 택일) - 도시계획 - 교통계획 또는 공학 - 환경계획 또는 공학 - 경제학 또는 행정학 - 도시.지리정보체계 또는 전산정보 - 사회학 또는 사회 복지학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	- 영 어 - 행정학, 행정법, 법학, 경제학, 경영학, 회계학 중 택일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직	- 영 어 - 전공분야(분야별로 택일) .사서 : 문헌정보학 .전산 : 자료구조론, 소프트웨어공학, 전자계산기구조론, 통신이론 .조사 : 매스컴론, 출판잡지론, 신문론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능직	- 영 어 - 일반상식																										
<삭제>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※ 분야별 필기시험은 위 전공과목 외에도 원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직원평가규칙 일부개정[안]

1. 의결주문

직원평가규칙 일부개정[안]을 다음과 같이 의결함.

2. 제안사유

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직종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직종의 구분 개정
 - 일반적으로 전환된 기능직 삭제 및 공무원 신설(안 제3조, 안 제7조, 안 제23조)

4. 시행일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비연구직은 인사규정 제3조의 일반직, 전문직, <u>기능직</u>을 말한다. 3. (생략) <p>제7조(평가방법) ① 평가는 연구직과 비연구직을 구분하여 실시하며 비연구직은 일반직, 전문직, <u>기능직</u>으로 구분하여 직종별로 평가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23조(평가대상) 비연구직 인사평가는 일반직, 전문직 및 <u>기능직</u>에 적용한다.</p>	<p>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. 2. 비연구직은 인사규정 제3조의 일반직, 전문직, <u>공무직</u>을 말한다. 3. (현행과 같음) <p>제7조(평가방법) ① 평가는 연구직과 비연구직을 구분하여 실시하며 비연구직은 일반직, 전문직, <u>공무직</u>으로 구분하여 직종별로 평가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3조(평가대상) 비연구직 인사평가는 일반직, 전문직 및 <u>공무직</u>에 적용한다.</p>

정원외직원 임용규칙 일부개정[안]

1. 의결주문

정원외직원 임용규칙 일부개정[안]을 다음과 같이 의결함.

2. 제안사유

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직종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일반직으로 전환된 운영직 삭제
 - 운영직원 삭제(안 제3조, 제4조, 제15조)

4. 시행일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3조(정원외직원의 구분) ①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<u>운영직원이라 함은 행정업무 지원 및 사무 보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를 말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.</p> <p>제4조(임용자격) 정원외직원의 임용자격기준은 <별표1>과 같다.</p> <p><별표1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원외직원 임용자격기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직 급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임 용 자 격 기 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초빙연구위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초빙 선임연구위원</td> <td>가.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자격 중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. 행정경력을 가진 2급 이상 공무원 다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초빙 연구위원</td> <td>가.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자격 중 소지자로서 4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. 행정경력을 가진 3급 이상 공무원 다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초빙 부연구위원</td> <td>가.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나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촉연구위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촉연구위원</td> <td>가.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나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보조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보조원</td> <td>가. 학사학위 (4년제 대학) 소지자 나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운영직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운영직원</td> <td>가. 학사학위 (4년제 대학) 소지자 나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직 급	임 용 자 격 기 준	초빙연구위원	초빙 선임연구위원	가.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자격 중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. 행정경력을 가진 2급 이상 공무원 다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	초빙 연구위원	가.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자격 중 소지자로서 4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. 행정경력을 가진 3급 이상 공무원 다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	초빙 부연구위원	가.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나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	위촉연구위원	위촉연구위원	가.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나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	연구보조원	연구보조원	가. 학사학위 (4년제 대학) 소지자 나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	운영직원	운영직원	가. 학사학위 (4년제 대학) 소지자 나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	<p>제3조(정원외직원의 구분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삭제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.</p> <p>제4조(임용자격) 정원외직원의 임용자격기준은 <별표1>과 같다.</p> <p><별표1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원외직원 임용자격기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직 급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임 용 자 격 기 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초빙연구위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초빙 선임연구위원</td> <td>가.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자격 중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. 행정경력을 가진 2급 이상 공무원 다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초빙 연구위원</td> <td>가.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자격 중 소지자로서 4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. 행정경력을 가진 3급 이상 공무원 다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초빙 부연구위원</td> <td>가.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나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촉연구위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촉연구위원</td> <td>가.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나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보조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보조원</td> <td>가. 학사학위 (4년제 대학) 소지자 나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제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제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제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직 급	임 용 자 격 기 준	초빙연구위원	초빙 선임연구위원	가.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자격 중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. 행정경력을 가진 2급 이상 공무원 다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	초빙 연구위원	가.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자격 중 소지자로서 4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. 행정경력을 가진 3급 이상 공무원 다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	초빙 부연구위원	가.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나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	위촉연구위원	위촉연구위원	가.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나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	연구보조원	연구보조원	가. 학사학위 (4년제 대학) 소지자 나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	<삭제>	<삭제>	<삭제>
구 분	직 급	임 용 자 격 기 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초빙연구위원	초빙 선임연구위원	가.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자격 중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. 행정경력을 가진 2급 이상 공무원 다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초빙 연구위원	가.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자격 중 소지자로서 4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. 행정경력을 가진 3급 이상 공무원 다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초빙 부연구위원	가.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나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촉연구위원	위촉연구위원	가.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나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보조원	연구보조원	가. 학사학위 (4년제 대학) 소지자 나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운영직원	운영직원	가. 학사학위 (4년제 대학) 소지자 나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직 급	임 용 자 격 기 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초빙연구위원	초빙 선임연구위원	가.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자격 중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. 행정경력을 가진 2급 이상 공무원 다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초빙 연구위원	가.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자격 중 소지자로서 4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. 행정경력을 가진 3급 이상 공무원 다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초빙 부연구위원	가.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나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촉연구위원	위촉연구위원	가.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나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보조원	연구보조원	가. 학사학위 (4년제 대학) 소지자 나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삭제>	<삭제>	<삭제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개정안
<p>제15조(임무) ① ~ ③(생략)</p> <p>④ <u>운영직원은 소속 부서장 또는 팀장의 지시를 받아 행정 및 사무업무를 처리한다.</u></p>	<p>제15조(임무) ① ~ 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삭제></p>

인사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[안]

1. 의결주문

인사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[안]을 다음과 같이 의결함.

2. 제안사유

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직종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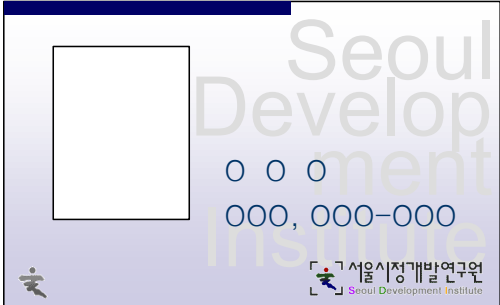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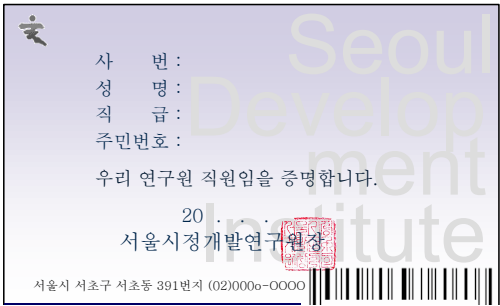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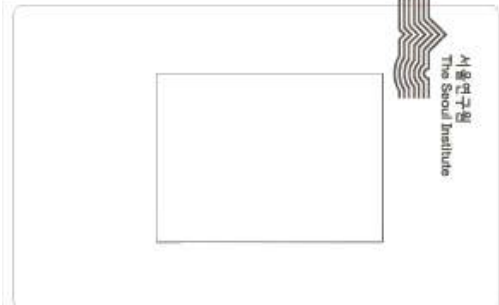

- 직급 신설
 - 일반직·전문직 4급 신설(안 제14조의1)
- 일반직으로 전환된 기능직 삭제 및 공무원 신설
 - 기능직 삭제 및 공무원 신설(안 제14조의1)
- 신분증 변경(안 제15조 별표3)

4. 시행일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조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4조의1(정현원대비표) ① 임용권자는 직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 월말일을 기준으로 <별지제18호서식>의 정현원 대비표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정현원대비표를 작성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<별지 제18호서식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현원대비표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. . . 현재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rowspan="2">정원</th> <th rowspan="2">현원</th> <th colspan="5">연구직</th> <th colspan="3">관리직</th> <th colspan="3">정보직</th> <th rowspan="2">기 능 직</th> <th rowspan="2">정 원 외 직 원</th> <th rowspan="2">합 계</th> </tr> <tr> <th>선 임 연 구 위 원</th> <th>부 연 구 위 원</th> <th>연 구 위 원</th> <th>1 급 관 리 직</th> <th>2 급 관 리 직</th> <th>3 급 관 리 직</th> <th>4 급 관 리 직</th> <th>5 급 관 리 직</th> <th>가 급</th> <th>나 급</th> <th>다 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정원	현원	연구직					관리직			정보직			기 능 직	정 원 외 직 원	합 계	선 임 연 구 위 원	부 연 구 위 원	연 구 위 원	1 급 관 리 직	2 급 관 리 직	3 급 관 리 직	4 급 관 리 직	5 급 관 리 직	가 급	나 급	다 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<p>제14조의1(정현원대비표) ① 임용권자는 직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 월말일을 기준으로 <별지제 18호서식>의 정현원 대비표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정현원대비표를 작성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별지 제18호서식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현원대비표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. . . 현재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rowspan="2">정원</th> <th rowspan="2">현원</th> <th colspan="4">연구직</th> <th colspan="4">일반직·전문직</th> <th rowspan="2">공 무 직</th> <th rowspan="2">정 원 외 직 원</th> <th rowspan="2">합 계</th> </tr> <tr> <th>선 임 연 구 위 원</th> <th>부 연 구 위 원</th> <th>연 구 위 원</th> <th>1 급</th> <th>2 급</th> <th>3 급</th> <th>4 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정원	현원	연구직				일반직·전문직				공 무 직	정 원 외 직 원	합 계	선 임 연 구 위 원	부 연 구 위 원	연 구 위 원	1 급	2 급	3 급	4 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			정원	현원	연구직					관리직			정보직				기 능 직	정 원 외 직 원	합 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선 임 연 구 위 원	부 연 구 위 원	연 구 위 원			1 급 관 리 직	2 급 관 리 직	3 급 관 리 직	4 급 관 리 직	5 급 관 리 직	가 급	나 급	다 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정원	현원	연구직				일반직·전문직				공 무 직	정 원 외 직 원	합 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선 임 연 구 위 원	부 연 구 위 원	연 구 위 원	1 급	2 급	3 급	4 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5조(규격, 제식 및 채용방법) ① 신분증에는 사원번호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, 그 규격, 제식 및 기재사항은 <별표3>과 같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15조(규격, 제식 및 채용방법) ① 신분증에는 사원번호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, 그 규격, 제식 및 기재사항은 <별표3>과 같다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개정안
<p>〈별표 3〉</p> <p>신분증규격 〈앞면〉</p> <p>8.5cm</p>  <p>5.4cm</p> <p>〈뒷면〉</p> <p>8.5cm</p>  <p>5.4cm</p>	<p>〈별표 3〉</p> <p>신분증규격 〈앞면〉</p> <p>8.5cm</p>  <p>5.4cm</p> <p>〈뒷면〉</p> <p>8.5cm</p>  <p>5.4cm</p>

연봉급산정규칙 일부개정[안]

1. 의결주문

연봉급산정규칙 일부개정[안]을 다음과 같이 의결함.

2. 제안사유

- 2017년 연봉 인상에 따른 연봉급 산정기준표 마련 및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직종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2017년 연봉급 산정기준 개정(안 제2조 별표1) - 자료별도
 - ※ 운영직원의 연봉은 정규직과 동일한 조건으로 2017년도 연봉을 인상하여 7월까지 소급적용하고 “무기계약직 운영지침”은 폐지
- 연구직 일반경력 환산표 개정
 - 석사로서 연구책임 경력 산정항목 삭제(안 제3조 별표2)
- 일반직 전환에 따른 기능직급 삭제
 - 일반직으로 전환된 기능직급 및 경력사항 삭제(안 제3조 별표2)

4. 시행일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연봉급의 책정) ① 직급·등급별 연봉금액은 <별표1>의 연봉급산정기준표에 따른 연봉액을 적용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3조(연봉등급의 책정) ① (생략)</p> <p>② 신규임용자의 경력은 <별표2>의 경력환산기준에 따른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[별표2] 경력 환산 기준 가. 기 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5px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e0e0e0;"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직 급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경 력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환 산 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</td> <td>1. 군복무기간 (3년이내) 2. 일반경력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% "나"항 일반경력 환산표에 의함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전문직</td> <td>1. 학위경력 (석사2년, 박사4년) 2. 군복무기간 (3년이내) 3. 일반경력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% 100% "나"항 일반경력 환산표에 의함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일반직 기능직</td> <td>1. 공무원경력 (관리직-행정직공무원 경력, 기능직-해당 기능직공무원 경력) 2. 군복무기간(의무복무기간) 3. 기타일반경력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% (단, 고용직 공무원경력은 80%) 100% "나"항 일반경력 환산표에 의함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직 급	경 력	환 산 율	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	1. 군복무기간 (3년이내) 2. 일반경력	100% "나"항 일반경력 환산표에 의함	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전문직	1. 학위경력 (석사2년, 박사4년) 2. 군복무기간 (3년이내) 3. 일반경력	100% 100% "나"항 일반경력 환산표에 의함	일반직 기능직	1. 공무원경력 (관리직-행정직공무원 경력, 기능직-해당 기능직공무원 경력) 2. 군복무기간(의무복무기간) 3. 기타일반경력	100% (단, 고용직 공무원경력은 80%) 100% "나"항 일반경력 환산표에 의함	<p>제2조(연봉급의 책정) ① 직급·등급별 연봉금액은 <별표1>의 연봉급산정기준표에 따른 연봉액을 적용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연봉등급의 책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신규임용자의 경력은 <별표2>의 경력환산기준에 따른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2] 경력 환산 기준 가. 기 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5px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e0e0e0;"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직 급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경 력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환 산 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</td> <td>1. 군복무기간 (3년이내) 2. 일반경력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% "나"항 일반경력 환산표에 의함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전문직</td> <td>1. 학위경력 (석사2년, 박사4년) 2. 군복무기간 (3년이내) 3. 일반경력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% 100% "나"항 일반경력 환산표에 의함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일반직 <삭제></td> <td>1. 공무원경력 (일반직-행정직공무원 경력) <삭제> 2. 군복무기간(의무복무기간) 3. 기타일반경력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% (단, 고용직 공무원경력은 80%) 100% "나"항 일반경력 환산표에 의함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직 급	경 력	환 산 율	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	1. 군복무기간 (3년이내) 2. 일반경력	100% "나"항 일반경력 환산표에 의함	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전문직	1. 학위경력 (석사2년, 박사4년) 2. 군복무기간 (3년이내) 3. 일반경력	100% 100% "나"항 일반경력 환산표에 의함	일반직 <삭제>	1. 공무원경력 (일반직 -행정직공무원 경력) <삭제> 2. 군복무기간(의무복무기간) 3. 기타일반경력	100% (단, 고용직 공무원경력은 80%) 100% "나"항 일반경력 환산표에 의함
직 급	경 력	환 산 율																							
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	1. 군복무기간 (3년이내) 2. 일반경력	100% "나"항 일반경력 환산표에 의함																							
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전문직	1. 학위경력 (석사2년, 박사4년) 2. 군복무기간 (3년이내) 3. 일반경력	100% 100% "나"항 일반경력 환산표에 의함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기능직	1. 공무원경력 (관리직-행정직공무원 경력, 기능직-해당 기능직공무원 경력) 2. 군복무기간(의무복무기간) 3. 기타일반경력	100% (단, 고용직 공무원경력은 80%) 100% "나"항 일반경력 환산표에 의함																							
직 급	경 력	환 산 율																							
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	1. 군복무기간 (3년이내) 2. 일반경력	100% "나"항 일반경력 환산표에 의함																							
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전문직	1. 학위경력 (석사2년, 박사4년) 2. 군복무기간 (3년이내) 3. 일반경력	100% 100% "나"항 일반경력 환산표에 의함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<삭제>	1. 공무원경력 (일반직 -행정직공무원 경력) <삭제> 2. 군복무기간(의무복무기간) 3. 기타일반경력	100% (단, 고용직 공무원경력은 80%) 100% "나"항 일반경력 환산표에 의함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

[별표2]

나. 일반경력 환산표

구 분	기관의 유형 (기관수준의 유사성 및 수월성)			비 고	
	A	B	C		
업무의 유사 정도	I	100%	80%	70%	※ 부연구위원 이상은 기관의 유형에 따라 산정한 경력을 학위취득경력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차등하여 산정 • 박사취득 이후 경력 100% • 석사취득 이후 책임 경력 90% • 석사취득 이후 경력 70% • 학사취득 이후 경력 50% 단, 학위취득 이전에 상위 학위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때는 운영위원회 에서 결정
	II	80%	70%	60%	
	III	70%	60%	50%	

- ※ 주 : 기관유형 A : 우리 연구원과 성격 또는 질적 수준이 유사한 기관
 기관유형 B : 우리 연구원과 성격 또는 질적 수준 측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기관
 기관유형 C : 우리 연구원과 성격 또는 질적 수준 측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기관
 업무유형 I : 우리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업무내용과 유사한 경우
 업무유형 II : 우리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업무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경우
 업무유형 III : 우리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업무 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경우

개 정 안

[별표2]

나. 일반경력 환산표

구 분	기관의 유형 (기관수준의 유사성 및 수월성)			비 고	
	A	B	C		
업무의 유사 정도	I	100%	80%	70%	※ 부연구위원 이상은 기관의 유형에 따라 산정한 경력을 학위취득경력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차등하여 산정 • 박사취득 이후 경력 100% • <삭제> • <삭제> • <삭제> • <삭제>
	II	80%	70%	60%	
	III	70%	60%	50%	

- ※ 주 : 기관유형 A : 우리 연구원과 성격 또는 질적 수준이 유사한 기관
 기관유형 B : 우리 연구원과 성격 또는 질적 수준 측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기관
 기관유형 C : 우리 연구원과 성격 또는 질적 수준 측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기관
 업무유형 I : 우리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업무내용과 유사한 경우
 업무유형 II : 우리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업무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경우
 업무유형 III : 우리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업무 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경우